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03
------------	------

2020년 9월 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정진철 의원 외 9명

나. 제안일자 : 2020년 7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철 의원)

가. 제안사유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경제 부흥을 추진 중임. 특히,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 중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에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등의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반개념인 ‘지능형 교통체계’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서울시 정책의 적극 추진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정책이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하여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능형교통체계’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7호)
-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8.13.~2020.8.21.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가결¹⁾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분야를 강조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안에 동의함

1) 교통정책과-14168(2020.8.22.)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여 미래 교통운영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미래 교통 시스템 구축에 선도적인 대응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²⁾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울시 교통체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올해 7월경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³⁾을 발표하여 디지털 뉴딜,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분야에서 10개 대표과제를 선정한 바 있고, 이 중 ‘SOC 디지털화’⁴⁾에서는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C-ITS)⁵⁾,

2)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교통 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교통 체계

3) ‘한국판 뉴딜’ 정책(’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에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안전강화 등을 도모하는 국가계획

4)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3. 비대면 육성 4. SOC 디지털화

5)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ITS는 단방향적인 교통관리, 정보수집 등의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적 예방을 초점으로 교통상황과 관련한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간에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 교통환경 등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철도 구축, 자율자동차 상용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차체 차원에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제도 및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임

-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 제74조에서는⁶⁾ 시·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⁷⁾을 반영하거나 관할 지역에서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도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⁸⁾을 추진하여 ‘2018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교통현황 분석과 신교통수단 도입 및 장기발전계획의 근거자료를 마련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한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6)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법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사업 추진계획(교통정책과-16315)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임

- 기존 지능형교통체계에서 한 단계 진보된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가 등장하는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동 개정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협력주행, 드론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u></p> <p>제13조의2(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u>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